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40
----------	------

2025년 9월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지급 규정에 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조).
- 2)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3)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12.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12.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회전기금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표 2] 개정안 주요골자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해촉, 제

현행	개정안
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수당 등)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전기금 운용 현황

-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62, 제정 2020.7.16.)에 근거하여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투자재원 마련, 물재생센터 노후 시설물 교체 등에 대비한 감가상각비 적립 등 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1)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표 3] 회전기금 조성재원 및 용도

조성재원	기금용도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함)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회전기금은 2025년도 기준 총 951억 24백만원을 조성 중이고, 최근 3년간 운용 현황은 [표 3]과 같음.

[표 4] 최근 3년간 회전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 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연 도 이월액
2025	95,124	-	-	-	3,000	92,124	-	-	95,124	-	75,914	-	-	19,210	-
2024	92,124	-	15,601	-	3,291	73,231	-	-	92,124	-	92,124	-	-	-	-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1	-	73,231	-	-	-	-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가.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안 제3조는 회전기금 존속기한이 2025.12.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12.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3항³⁾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⁴⁾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2025.5.15.일 자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⁵⁾를 완료한바 회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 요건을 충족했다 할 것이며,
 - 회전기금이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대규모 사업 재원([붙임] 참조)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금회 존속기한 연장은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나. 회전기금 전출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2는 회전기금을 조례 제6조⁶⁾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② (생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4)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⑧ (생략)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 ⑪ (생략)

5) '2025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안내', 재정담당관-6299, 2025.5.15.

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금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39조7)에서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⁸⁾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기금 전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내부 자금 이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회전기금의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다.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안 제12조, 안 제13조제3항, 안 제15조)

- 먼저, 안 제12조는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 이는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7)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8)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24.7., p.293

기피·회피 규정의 정비로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긍정적이라 할 것임.

- 다음으로, 안 제13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직무대행 규정의 신설을 통해 장기간의 회의 공백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9)을 준용”토록 했던 것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이는 ‘준용’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지급 대상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별다른 문제는 없음.

[붙임] 서울시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9)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 ② - ③ (생략)

[붙임] 서울시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 계
<사업비 지출 총 계>	12,301	13,004	15,963	15,969	15,354	15,543	15,593	21,958	24,236	25,091	175,011
하수관로 계	6,936	7,512	6,956	6,774	6,618	6,640	6,719	5,942	6,683	6,764	67,544
투자사업비	6,100	6,668	6,104	5,913	5,750	5,764	5,835	5,057	5,799	5,880	58,870
유지관리비	836	844	852	861	868	876	884	885	884	884	8,674
물재생센터 계	4,857	4,981	8,495	8,681	8,220	8,385	8,354	15,494	17,029	17,801	102,297
투자사업비 소계	760	761	4,148	4,204	3,609	3,467	3,289	10,589	13,192	14,624	58,683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0	330	3,407	3,549	2,698	2,746	2,846	9,897	12,519	13,992	52,194
총인처리시설	5	21	284	294	557	250	-	-	-	-	1,411
초기우수처리시설	-	-	-	-	-	70	100	350	350	350	1,220
차집관로 성능개선	140	140	140	140	140	227	227	227	227	227	1,835
슬러지자체처리시설	160	60	56	40	30	-	-	-	-	-	346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사업	-	-	60	100	100	58					318
서울형 물산업 클러스터						40	40	40	40	0	160
용역 등 기타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0
차집관로 통합운영시스템	178	144	140	20	20	20	20	20			562
차집관로 단절구간 정비	8	6	6	6	6						32
우수토실 역류방사설	5	6									11
유지관리비 (4개 센터)	4,097	4,220	4,347	4,477	4,611	4,918	5,065	4,905	3,837	3,137	43,614
행정업무 및 재무활동비	508	510	512	514	516	518	520	522	524	526	5,170
CSOs저감시설	-	-	402	941	937	-	-	105	58	58716	61,159
(일반회계) 빗물펌프장,저류조	716	455	884	1,068	717	174	88	-	-		4,12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40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지급 규정에 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조)
- 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2133 - 385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 -----.
<신 설>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수당 등)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
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
으로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주무관(02-2133-3854)